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52
----------	------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0년 4월 3일
- 다. 회부일 : 2020년 4월 8일
- 라. 상정일 :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강동청소년센터는 2012.07.01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20.06.30.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2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
-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 수련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2.06.30.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강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시설로,
- 지난 3년간 강동청소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과 대안학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
- 직원의 총 318명 중 63%가 청소년지도사로, 총 73개 분야 517개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 강동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종합센터로서 청소년활동, 상담, 복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시설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동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이용 실적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2017년 72%→2019년 77%).
- 따라서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강동청소년센터를 운영토록 하고자 함.

3)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 시설규모 : 대지 1,983㎡, 연면적 5,125㎡ (지상 4층, 지하2층)
- 주요시설 : 헬스장, 체육관, 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2년(2020.7.1 ~ 2022.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676백만원('20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08백만원, 사업비 1,066백만원, 물건비 등 702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3년, 2017.7.1.~2020.6.30.)이 종료될 예정인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안정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 시설규모 : 대지 1,983㎡, 연면적 5,125㎡ (지상 4층, 지하2층)
- 주요시설 : 헬스장, 체육관, 극장, 프로그램실 등
- 위탁기간 : 2년(2020.7.1 ~ 2022.6.30.)
- 선정방식 : 재계약(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소요예산 : 2,676백만원(2020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이하 '강동청소년센터')는 2020년 26억7천6백만원의 예산과 26명(정규직 18명, 비정규직 8명)의 인력으로 목적사업, 교류사업 등 6개 분야, 23개 사업, 124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조직현황 〉



< 2020년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

분야	사업명	프로그램명
시설대관	시설대관	시설사용료수입 등 총 2개 사업
강좌	교육문화사업	어메이징 피카소 등 총 7개 사업
	생활체육사업	백조의 호수 발레교실 등 총 4개 사업
목적사업	진로활동	꿈을 UP! GO!, 청(淸)춘(春) 등 총 8개 사업
	창의인성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총 14개 사업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길을 묻다 등 총 4개 사업
	동아리활동	청소년 재능기부단 등 20개 사업
	문화교류활동	올빼미캠프 “우리 오늘 밤샘!” 등 총 12개 사업
	가족활동	생각수북(BOOK)소나기 등 총 6개 사업
	마을연계활동	청소년파티쉐"꿈을꾸는빵굽터" 등 총 9개 사업
	자율참여활동	청소년활동기획단 등 총 5개 사업
	특화활동	청소년 환경 나눔마켓 등 총 4개 사업
상담사업	상담활동	자아성장프로그램 "나를찾아떠나는여행" 등 총 3개 사업
기타사업	기타사업	홍보출판사업 등 총 4개 사업
특별지원사업	방과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운위	청소년운영위원회
	찾아가는청소년센터	독립선언서 등 총 6개 사업
	유스데이	Fun Day May Day 등 총 6개 사업
	우수프로그램	진로토크콘서트'진담' 등 총 2개 사업
	배치	청소년배치지도사
	코디	마을속청소년코디네이터
	특성화	재생놀이터-상상
	기타공모	놀토버스 등 총 4개 사업

※ (사)한국청소년연맹 ‘3온’ 전략으로 강동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사)한국청소년연맹의 강동청소년센터 운영방안 >

3 ON(TRIPLE-ON) 실행

○ 1-ON (순우리말 : 모두의 온)

시립강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 행복성장 종합지원센터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예비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린공간으로서 전 연령층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 2-ON (켜다 ON)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등불을 켜고자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삶을 만나며 개인역량강화에 맞는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확대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간화’ 라는 핵심키워드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변화에 발맞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력,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에 불을 켜고 끊임없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PBL(Project Based Learning) 운영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

○ 3-ON (따뜻할 온)

우리사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살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이해와 배려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소외계층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균등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 평생교육국에서는 2012년 7월 개관 이후 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없이 ‘보고’로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고, 개관 8년이 경과한 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최초로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의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강동청소년센터의 동의현황, 연혁, 민간위탁 추진 현황 〉

○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 현황

- 의회 동의 일자 : 없음(미동의).
- 의회 보고 일자 : 2015.6.24.

○ 연혁

- 2010년 5월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신축공사허가
- 2010년 7월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신축공사 착공
- 2012년 6월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용승인(준공)
- 2012년 7월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 2012년 10월 : 서울특별시립 강동청소년센터 개관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2012.07.01.~2015.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공개모집
- 2차 2015.07.01.~2017.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재계약
- 3차 2017.07.01.~2020.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민간위탁의 동의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인 제4조 및 제4조의3은 명확한 적용(① 조례 개정 전부터 기시행한 민간위탁 사무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② 재동의 기준일은 최초위탁일인가? 아니면, 최초 의회동의일로 하는가? ③ 민간위탁 사무마다 민간위탁의 기간이 상이하며, 재위탁·재계약 등 계약방식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하기 어려움)을 위하여 조문신설 후 3차례 개정한바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의 안 번 호 : 9-00710

발의연월일 : 2015.9.1.

제 안 이 유 :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하는 전체 사무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간위탁의 동의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황

※ [시행 2012. 3. 29.] [서울특별시조례 제5210호, 2011. 12. 29.,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조제목 변경 2009. 07. 30)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행 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19호, 2013. 8.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시행 2016.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6094호, 2016. 1.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행 2017. 7. 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67호, 2017. 7. 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평생교육국의 ‘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 미추진 사유 〉

차수	기 간	수탁단체	누적기간	동의 미추진 사유
1	2012.7.1.~2015.6.30. (3년)	한국 청소년 연맹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 시행(2012.3.29.) 전 위수탁 협약이 완료되어 (2011.11.7. 협약체결) 개정조례 미적용 - 시설 신축 및 신규위탁으로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해 위탁자 조기 선정 및 협약체결 하였음
2	2015.7.1.~2017.6.30. (2년)	한국 청소년 연맹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8.15.개정조례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시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2015.6.24.)제출
3	2017.7.1.~2020.6.30. (3년)	한국 청소년 연맹	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8.15.개정조례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시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2017.2.28.)제출

- 평생교육국은 강동청소년센터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시설로, 청소년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한국청소년연맹과의 재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첫째, 한국청소년연맹은 7개의 시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인사·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조직운영, 재산 관리 미흡, 운영규정 관리 미흡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받은바 있으며, 이러한 공통 지적사항은 강동청소년센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바, 기존 수탁 법인과 재계약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국청소년연맹의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 현황 〉

계	청소년센터(4)	유스호스텔, 특화시설(2)	기타(1)
7	동대문, 중랑, 강동, 구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활동진흥센터	금천단기 청소년쉼터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강동청소년센터는 2019년 성과 보고서에서 ①운영규정 중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사항 미준수(외부위원 수, 자격),

②운영규정은 제정하였으나, 시조례에 의한 물품관리, 안전관리,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미반영, ③종사자를 수탁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설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④호봉산정 시 내부검토 및 결재과정 없이 임의로 산정, ⑤재산관리대장은 비치하지 않고, 비품관리대장은 재물조사 목록표와 혼용하여 관리, ⑥문서 보관상태는 양호하나 소모품을 수불대장으로 작성 관리하지 않고 비품관리대장으로 작성, ⑦물품·공사·용역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 시 규정된 구비서류 누락 사례 다수라는 지적이 있었음.

-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동대문수련관**은 2014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 수련관 중 소득기준 초과자 대상선정, 참가직원 출장여비 과다지급, 이용자부담비용을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부적정, 강습료 상한액 기준 미준수, 성범죄 경력 미조회,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인사관리규정 부적정,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능보강 사업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승인전 사용, 관리운영규정 미비. 세입업무 부적정, 보조금 관리 법령 미준수, 예산관리업무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음.
-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16년 10월 전문위원실 현장점검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 미활용, 클린카드 미사용, 예산집행 미흡, 운영관리규정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정기재물 조사 소홀, 시설운영규정 미흡, 사업계획 수립 내용 미흡, 공개채용 절차 미준수 등이 지적되었음.
-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경우 2016년 청소년시설 종합성과 평가에서 시설관리 운영규정 미흡(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회계계약 체결 시 관련서류 미흡, 청소년시설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16년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정기재물 조사 소홀, 시설운영규정 미흡, 사업계획 수립 내용 미흡, 공개채용 절차 미준수 등이 지적되었고, 2016년 10월에 있었던 시의회의 현장점검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 미활용, 클린카드 미사용, 예산집행 미흡, 운영관리규정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2013년 성과보고서에서 수당지급 부적정, 국내외 여비 지급 부적정,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성과상여금 산정방식 부적정,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등이 지적되었음.

- 둘째, 강동청소년센터는 강동구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정차하는 버스는 4개(3412번, 342, 370, 강동마을버스 5번) 노선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청소년연맹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매년 비슷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접근성 관련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평생교육국은 지하철 노선 연장,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로 접근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국청소년연맹의 2012년 개소시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지하철 연장 및 신규 청소년 시설 설치 시까지의 접근성 해결노력은 부진한 것으로 보여짐.

- 셋째,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청소년연맹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노력은 5점(100점 만점 환산점수 50점)인데 반해, 사업성과 및 사업활동은 각각 34점(100점 만점 환산점수 97.1점)과 8.5점(100점 만점 환산점수 8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주었는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수탁법인이 수립한 계획 대비 사업시행 수'로 민간 위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2019년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계	사업 인프라	사업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질적수준 제고노력	사업 성과	이용자 만족도	가감점
배당 점수	100	25	10	10	35	20	가점 :+10 감점 :-10
획득 점수	86.2	19.1	8.5	5	34	17.6	2
100점 만점 환산점수	79.3	76.4	85.0	50.0	97.1	88.0	

- 청소년연맹은 성과평가의 가점(加點, 최대 10점) 중 ‘제로페이 이용’으로 2점의 가점을 받았으며, 감점(減點) 사항은 없었으나, 가·감점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19년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중 ‘가감점’ 내역 〉

분야	평가범주	평가점수	평가지표	배점	평정점수
가감점	가점	+10	목표상향	+5	0
			시정기여도	+5	2
	감점	-10	인력 전문성 강화	-2	0
			지도점검 등 불이행	-8	0

- 성과평가의 가점 중 ‘목표상향’은 전년도 청소년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목표를 상향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강동청소년센터는 목표상향 없이 목표를 하향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즉, 최근 3년간 강동청소년센터 청소년이용자 수는 매년 28만명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연맹은 ‘목표 청소년 이용자 수’를 20만명에서 22만명 수준으로 계획하여 ‘가점’분야는 포기하고, 본 평가인 사업성과 부분에서 청소년이용 목표 달성률을 매년 손쉽게 초과달성하고 있어, 감점 분야와 본 평가의 실적분야에서 적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이용자 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이용인원	성인	유아	청소년	청소년 이용률
2017년	400,780	85,919	24,695	290,166	72%
2018년	380,132	73,026	22,895	284,211	75%
2019년 11월말	371,134	63,043	25,056	283,035	76%

※ 목표상향률 산정식(청소년 이용자 수 관련)

$$\text{목표 상향률} = \frac{\text{당해연도 목표 청소년 이용자 수}}{\text{전년도 청소년 이용자 수}} - 1 \times 100\%$$

① 강동센터의 2018년 목표상향률 = $-24\% = \left(\frac{200,991\text{명}}{290,166\text{명}}\right) - 1 \times 100\%$

② 강동센터의 2019년 목표상향률 = $-22\% = \left(\frac{221,777\text{명}}{284,211\text{명}}\right) - 1 \times 100\%$

〈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2019년 종합성과평가 중 ‘청소년이용률’ 발췌 〉

평가지표	배점	평정점수	평가내용 (강동수련관)
청소년 이용률	1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이용률 : 1.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 (290,166명÷400,780명) × 2.5 = 1.8 - 2018년 : (284,211명÷380,132명) × 2.5 = 1.8 ○ 청소년 프로그램 비율 : 2.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 (130개÷144개) × 2.5 = 2.2 - 2018년 : (118개÷132개) × 2.5 = 2.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이용자 목표달성율 :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 (290,166명÷230,112명) × 5 = 6.3 - 2018년 : (284,211명÷220,991명) × 5 = 6.4 </div>

- 또한, 종합성과평가에서 청소년연맹은 2019년에 감점 내역은 없었으나, 2019년 지적사항 대부분이 2017년 지적 후 시정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시정조치 후 재발되는 유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함께 성과평가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사 지적사항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시정조치 후 재지적사항 내역 〉

2019년 지적사항	2017년 지적 후 시정조치 사항
· 운영규정 중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사항 미준수(외부위원 수, 자격)	· 종사자채용서류 미흡
· 운영규정은 제정하였으나, 시조례에 의한 물품관리, 안전관리,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미반영하였음.	· 시설 자체 운영규정 보완필요
· 종사자를 수탁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설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종사자채용서류 미흡 · 조직정원 관리 부적정
· 호봉산정 시 내부검토 및 결재과정 없이 임의로 산정함	· 지출업무처리 부적정 · 조직정원 관리 부적정

· 재산관리대장은 비치하지 않고, 비품관리대장은 재물조사 목록표와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재물조사 작성규정 미준수 · 시설자체 운영규정 보완 필요
· 문서 보관상태는 양호하나 소모품을 수불대장으로 작성 관리하지 않고 비품관리대장으로 작성	· 재물조사 작성규정 미준수
· 물품·공사·용역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 시 규정된 구비서류 누락 사례다수	· 지출업무처리 부적정
2019년 신규 지적사항	
· 차량일지 관리의 개선 필요	
· 프로그램 질적수준제고 - 성과목표의 적절성 : 단, 2017년 및 2018년 연간사업계획은 사업목표의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서술없이 대단히 미흡한 수준으로 수립	
· 홍보수단별 홍보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2018년도 홍보결과에 대한 2019년 계획에의 환류는 다소 미흡.	

- 결론적으로 한국청소년연맹은 목표 하향조정, 지적사항 미개선(2017년 조치사항이 2019년 재지적) 외에도 전례답습적 계획수립(성과목표 수립, 성과창출,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형성, 청소년 이용률), 발전없는 성과수준을 유지(민원창구 설치, 만족도 조사여부, 네트워크 구축 여부, 직원 교육시행 여부 등)하고 있는바, 한국청소년연맹의 혁신적인 노력들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52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강동청소년센터는 2012.07.01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20.06.30.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2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
- 다. 현 수탁법인이 청소년 수련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2.06.30.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강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시설로,
- 지난 3년간 강동청소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과 대안학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
- 직원의 총 318명 중 63%가 청소년지도사로, 총 73개 분야 517개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 강동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종합센터로서 청소년활동, 상담, 복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시설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동안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이용 실적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2017년 72%→2019년 77%)
- 따라서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강동청소년센터를 운영토록 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 시설규모 : 대지 1,983 m^2 , 연면적 5,125 m^2 (지상 4층, 지하2층)
- 주요시설 : 헬스장, 체육관, 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2년(2020.7.1 ~ 2022.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676백만원('20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08백만원, 사업비 1,066백만원, 물건비 등 70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
|--|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 |
|---|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
|--|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2133-4122)